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7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6533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1. 3. 4.
판 결 선 고	2021. 3.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9. 9. 10. 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4,635,410원 부과처분과 2020. 2. 4. 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92,519,750원[1]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청구취지에 취소를 구하는 2020. 2. 4.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이 90,141,680원이라고 적었다. 그런데 피고는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9. 9. 17.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90,141,680원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지만, 피고가 실제로 2020. 2. 4. 원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7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점포 소유권 취득 및 취득세 신고·납부

1) 원고는 2018. 7. 26. [redacted]시 B건물 2층 C호(이하 'C호')와 D호(이하 'D호', C호와 D호를 한꺼번에 말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점포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은 아래 표에 적힌 것과 같다.

구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C호	103.12㎡	69.469㎡
D호	93.74㎡	69.469㎡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취득하는 데 들어간 806,670,000원[= 437,735,000원(C호) + 368,935,000원(D호)][2]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규정된 세율(4%)로 계산한 취득세 등 합계 37,106,820원을 신고·납부함으로써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점포에서의 유흥주점 영업

1) 원고는 2018. 8. 31. 이 사건 각 점포의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18. 9. 13. 이 사건 각 점포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고,[3] 그 무렵 이 사건 각 점포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시작했다.

다. 피고의 현장조사

에게 부과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합계 92,519,750원이다(이처럼 위 예고세액보다 실제 부과세액이 늘어난 이유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청구취지에 적은 금액은 92,519,75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각 부가가치세 제외

3) 다만, E(C호)과 F(D호)의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7

1)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2019. 5. 31.와 2019. 6. 5.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이 사건 각 점포에 있는 "객실" 면적이 이 사건 각 점포 전용면적 50%를 넘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객실개수	객실면적	전용면적
C호	4	56.916㎡	103.12㎡
D호	3	49.95㎡	93.74㎡

2)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 공무원들은 2019.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에 있는 객실의 면적이 이 사건 각 점포 전용면적의 50%를 넘으므로, 이 사건 각 점포는 지방세법에 따른 중과세 부과대상이다'라고 보고했다.

라.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1) 피고는 2019.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규정된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세율 4%를 적용해 계산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4,635,410원[= 3,884,740원(재산세) + 750,670원(지방교육세)]을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는 2019. 11. 28. [redacted]시장에게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redacted]시장은 2020. 1. 30. 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마.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1) 피고의 과세예고통지

피고는 2019.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7

규정된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조항에 규정된 세율 12%를[4] 적용해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뺀 합계 90,141,680원[= 48,925,450원(C호) + 41,216,230원(D호)]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에 적힌 것과 같다. 원고는 2019. 10. 15. 위 통지를 받았다.

구분	과세표준(원)	세목(세율)	본세(원)	가산세(원)		합계(원)
				무신고(20%)	납부지연	
C호	437,735,000	취득세(8%)	35,018,800	7,003,760	3,085,150	45,107,710
		농어촌특별세(10%)	3,501,880		315,860	3,817,740
	합계		38,520,680	7,003,760	3,401,010	**48,925,450**
D호	368,935,000	취득세(8%)	29,514,800	5,902,960	2,582,540	38,000,300
		농어촌특별세(10%)	2,951,480		264,450	3,215,930
			32,466,280	5,902,960	2,846,990	**41,216,230**

2)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불채택 결정

원고는 2019. 11. 15. 위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 경기도지사는 2020. 1. 8.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채택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

3)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피고는 2020. 2.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각 점포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꺼번에 말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4) 4%(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참조) + 8%= (중과세기준세율 2% × 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7

구분	세목	금액(원)
C호	취득세	46,280,840
	농어촌특별세	3,935,060
D호	취득세	38,989,050
	농어촌특별세	3,314,800
합계		**92,519,7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2, 3,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점포에 있는 "객실" 면적은 이 사건 각 점포 전용면적 50%를 넘지 않음

이 사건 각 점포에 있는 "객실" 면적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각 점포 전용면적 50%를 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점포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규정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점포가 위 "고급오락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C호의 경우

원고는 C호에 있는 객실 4개 중 1개를 객실이 아니라 직원 휴게실로 사용했다. 그러므로 C호 중 객실 면적은 56.916㎡이 아니라 46.05㎡이다. 따라서 C호에 있는 객실 면적은 C호 전용면적 103.12㎡의 50%를 넘지 않는다.

나) D호의 경우

D호에 있는 객실 3개 중 2개 안에는 각각 화장실이 설치돼 있다. 그런데 원고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위 각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D호의 객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7

면적을 계산할 때에는 위 각 화장실의 면적 3.25㎡(= 1.82㎡ + 1.43㎡)를 빼야 한다. 따라서 D호에 있는 객실 면적은 46.7㎡로서 D호 전용면적 93.74㎡의 50%인 46.87㎡를 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각 점포 공통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각 점포의 소방도면과 줄자를 이용한 측정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각 점포에 있는 객실 면적을 계산했다. 그러나 그 계산 결과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에게는 무신고가산세율이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율이 적용돼야 함

가) 이 사건 각 점포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규정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점포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했을 뿐이다.

나)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무신고가산세율" 20%가 아니라 위 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과소신고가산세율" 10%를 적용한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무신고가산세율" 20%를 적용한 가산세를 부과했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점포의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7

1) 법리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과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따르면, '유흥접객원을 두고,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100 이상이며,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 이상인 영업장소와 그 토지'는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고, 그런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 일반과세물건을 취득했을 때에 비해서 무거운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나) 이처럼 지방세법이 다른 부동산들에 비해서 고급오락장에 더 무거운 취득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사치성 재산인 고급오락장을 취득해 얻게 되는 높은 담세력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한정된 자원을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건전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두566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재산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 위에서 본 관련법령의 체계와 고급오락장에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취지를 종합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100 이상인 영업장소'에 해당하는지는 그 영업장소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유흥주점영업에 사용될 수 있는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100 이상인지에 달려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제1항에서 본 사실 및 증거들과 을 제4, 11,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7

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점포는 객실 면적이 이 사건 각 점포 전용면적의 50/100 이상으로서 고급 오락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점포의 현황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도면과 현장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 각 점포에 있는 객실들은 모두 벽과 복도로 구분돼 있고,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2019. 6. 5.와 2019. 10. 15.에 위 객실들에는 소파, 테이블, 화장실, 노래반주기, 모니터 등이 설치돼 있었다.

나) C호의 경우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특히 갑 제9호증)만으로는 C호에 있는 객실 4개 중 1개를 객실이 아니라 직원 휴게실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사표에 C호에는 객실이 4개 있다고 적혀 있는데, C호의 허가명의자인 E은 위 조사표에 입회인 자격으로 서명하기도 했다.

-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위 객실이 직원 휴게실로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위 객실 역시 '유흥주점영업에 사용될 수 있는 객실'에 해당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위에서 본 것처럼 위 객실에는 유흥주점 영업에 필요한 각종 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 객실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점포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7

2018. 9.경부터 2020. 6.경까지 위 객실에 설치되어 있던 각종 시설을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지 1년 넘게 지난 2020. 6. 15.이 되어서야 위 객실 문에 "제한구역"이라는 표시를 붙여두었고, 2020. 7. 17.이 되어서야 비로소 위 객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위 객실에 설치되어 있던 소파와 테이블 등 모든 가구를 제거했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객실을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D호의 경우

- D호에 있는 객실 3개 중 2개 안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객실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각 화장실의 위치와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각 화장실은 객실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봐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점포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은 뒤 위 각 화장실이 화장실로 이용되지 않도록 변기나 세면대를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9. 10.경에야 위 각 화장실의 입구를 막았을 뿐이다.

라) 이 사건 각 점포에 있는 객실 면적 계산 결과

-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각 점포의 소방도면과 줄자를 이용한 측정 결과를 토대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점포에 있는 객실 면적 계산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 사건 각 점포의 정확한 면적을 밝히기 위한 측량감정을 신청했다가 그 신청을 철회했다).

- 오히려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2019. 6. 5. 원고 쪽이 참여한 가운데 줄자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7

이용해 이 사건 각 점포에 있는 객실을 측정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다툼 없는 사실),[5] 위 측정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객실 면적 계산결과는 믿을 만하다.

라. 원고에게는 무신고가산세율이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법리

가) 지방세법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제20조 제1항, 제4항),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그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 부과대상으로 되면, 그 중과세 부과대상으로 된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에게 그 중과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신고·납부할 의무를 새로 부과하고 있다(제20조 제2항). 이처럼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와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과세 취지와 목적, 세율, 과세요건, 의무이행기한 등이 서로 다른 별개 의무이다.

- 표를 위한 여백 -

5) 원고가 2020. 10. 19. 제출한 준비서면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7

구분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제4항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과세 취지와 목적	과세물건을 취득했다는 사실에 대해 담세력을 인정	이미 취득한 과세물건이 전보다 더 큰 담세력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담세력을 인정
세율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에 규정된 세율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에 규정된 세율
과세요건	과세물건을 취득했을 것	이미 취득한 과세물건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에 규정된 세율 적용대상으로 되었을 것
의무이행기한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한 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

나) 따라서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했더라도, 그 후 그 과세물건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에 규정된 세율 적용대상이 된 경우,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위에서 본 것처럼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와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서로 다른 별개 의무인 이상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제1항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각 점포를 취득하면서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했더라도,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점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 그 영업을 시작함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7

로써 이 사건 각 점포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규정된 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그러나 원고는 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7

별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7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7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5.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 그 대상 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로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